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59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안 제8조 및 제9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차규근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6. 4.

다. 회 부 일 : 2025. 6.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총괄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에서 획일적인 효율성이 강조되어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소속을 개편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Ⅲ. 검토의견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안 제8조 및 제9조)

현 행	개 정 안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기획재정부장관</u> 소속 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둔 - 위원장: <u>기획재정부장관</u>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국무총리</u> 소속 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둔 - 위원장: <u>국무총리</u>

현행법¹⁾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기능조정, 혁신지원,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명·해임, 경영실적평가 관련 사항을 심의·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 제33조에 따른 보수지침
-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의 점검과 개선
-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의 공개
-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결하는 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두고 있음.

공운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위원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관계부처 공무원(차관급 또는 차장 이상)과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등의 분야에 있는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11인 이내)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 7월 기준 공운위 민간위원은 8명²⁾이며 정부측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제외하고는 안전에 따라 관련 차관·차장이 정부 측 위원이 되어 공운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민간위원 수보다 적도록 운영하고 있음³⁾.

현행법상 공운위의 심사·의결 사항 중에는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임원의 임명, 경영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공운위의 구성 중 민간위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운위를 두고 있음에 따라 공운위 운영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운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공운위원장을

2)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 현황(2025.7월 기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전별로 지명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로 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고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공운위를 국무총리실에 두자는 의견은 과거에도 논의된 바 있음.

공운위의 전신인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⁴⁾ 설립 시(2003년) 국무총리실 또는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로 둘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산하기관 관련 정보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예산처로 하는 것이 적절하고 권한 행사와는 무관하다는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의 의견⁵⁾이 받아들여져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예산처 소속으로 정해졌고, 이후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합·제정⁶⁾되면서 공운위는 특별한 이견 없이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임.

4)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 2004. 4. 1.] [법률 제7057호, 2003. 12. 31., 제정]

당시 제정안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정부제출, 의안번호 161839), 정부산하기관운영개선및 서비스증진을 위한기본법안(전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748)이 하나의 대안으로 병합되어 처리됨.

5) ○기획예산처장관 박봉흠 지금 일부 오해가 있는 게 산하기관 관리를 기획예산처가 하면 그것이 무슨 권한이나 힘이 있는 것으로 오해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것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하기관을 국민들한테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알려줄 의무가 국가한테 있는 거고 그게 바로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이나 출연금 또는 정부의 법에 의해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관이 정부 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결국 재정을 통한 투명성들을 보려면 재정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그 짐을 지고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해서 소관을 기획예산처로 한 것이지, 기획예산처가 이것을 통해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 자료: 제243회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14차 전체회의 회의록(2003. 11. 19)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통합되면서 2007년 1월 제정되었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과거 경제기획원 소속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와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합되어 설립된 위원회임.

19년 전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 설립 논의 당시에 비해 공운위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대상⁷⁾과 심의·의결 사항⁸⁾이 확대되었다는 점,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이 기재부에 있음에도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정·운영·평가·인사 등을 관할하는 공운위 소관을 기재부가 담당함으로써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에 대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운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정부부처에서 운영하는 여러 위원회 내용 가운데, 다부처 관련된 위원회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으로 소속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주요 다부처 관련 위원회 소속 현황]

위원회	심사 내용	소속 및 위원장	근거법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소속: 대통령 위원장: 대통령이 위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 관련 사항	소속: 국무총리 위원장(2인): 국무총리 + 대통령이 지명하는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책임운영기관의 존속여부 및 제도 개선 등을 심의	소속: 행정안전부장관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및 조정	소속: 국무총리 위원장: 국무총리	사회보장기본법

7) 공공기관은 2007년 298개였으나 2025년 기준 331개로 33개가 증가하였음.

8) 2007년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인사감사의 수행, 채용비위 합격자 관련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공운위의 심의 대상으로 추가되었음.

다만 공운위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현재 체제는 예산배분을 통하여 국가 전반의 정책기획을 주관하는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출자나 출연, 보조 등의 형식으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포함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OECD 국가 중 과반수가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재정당국이 수행하고 있는 사례⁹⁾를 참고할 때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도 있음¹⁰⁾.

종합하면, 공운위의 소속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어느 곳에 두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지와 기재부에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권한 이외에 운영·평가상 관리·감독 권한을 통합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민주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임.

한편, 공운위 소속을 국무총리로 변경할 경우 타 입법례¹¹⁾를 고려하

9) OECD 38개국 공공기관 관리체계: 재무부 14개(37%), 재무부 소속기구 7개(18%), 기업(산업)부 2개(5%), 총리실 3개(8%), 주무부처 3개(8%), 기타 9개(24%)

10)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은 정부의 출자·출연·보조 대상기관으로 소유권 관리주체는 재정당국이 수행할 필요가 있고, 영국,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 싱가포르, 프랑스 등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정부지분 관리부서에서 공공기관을 경영감독 실시중이며, 경제·재정정책 연계성, 업무 효율성, 전문성 및 現 공운위 구성 등 종합 감안 시, 기재부 소관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1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 현행 각 부처의 차관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의 구성을 장관급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기획재정부 장관 소속하에</u>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 ----- ----- <u>국무총리</u> <u>소속으로</u> ----- ----- -----.
1. ~ 17. (생략)	1. ~ 17.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기획재정부 장관이</u> 위원장이 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 ----- <u>국무총리가</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u>기획재정부 장관의</u>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	4. ----- ----- ----- ----- <u>국무총리</u>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7